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형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844

발 의 년 월 일 : 2023년 05월 30일
발 의 자 : 김형재 의원(1명)
찬 성 자 :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 곽향기, 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김혜영, 김혜지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박상혁, 박ㆍ석, 박영한, 박춘선, 박칠성, 서상열, 송경택, 신복자, 심미경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 윤종복, 이병윤, 이상욱, 이새날, 이종배, 이종태, 이종환, 이효원, 임춘대, 최민규, 최유희, 최호정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49명)

1. 제안이유

○ 태권도 진흥을 위해 노후화된 태권도시설 개ㆍ보수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시설 안전 보장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」 제5조에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는 태권도 진흥사업 중 하나로 노후화된 태권도시설에 대한 개보수 비용 지원을 명시함.(안 제5조제1항제6호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노후화된 관내 태권도시설 개·보수 지원

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태권도 진흥사업) ① 시장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1. ~ 6. (생 략) <신 설> 7.·8. (생 략) ② (생 략)	제5조(태권도 진흥사업) ① ---------- 1. ~ 6. (현행과 같음) 6의2. 노후화된 관내 태권도시설 개·보수 지원 7.·8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문서번호	2023052300000004

미첨부사유서(2호)

요 청 인 : 김형재 의원	담 당 :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김지혜 주무관
접 수 일 : 2023.05.23.	
회 신 일 : 2023.05.26.	내용문의 : 02-2180-7953

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3. 미첨부 사유

4. 작성자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(태권도 진흥사업)제1항제6호의2에서 노후화된 관내 태권도시설 개·보수 지원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(2호) 사유

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
-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(태권도 진흥사업)제1항제6호의2에서 노후화된 관내 태권도시설 개·보수 지원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주 무 관	김지혜

☏ 02-2180-7953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